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7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이인선 · 고동진
김선교 · 안상훈 · 박충권
김용태 · 김태호 · 구자근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‘조각 실증’에 머물러 있어,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,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위주의 상향식 방식만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·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.

아울러,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‘통합특별시’를

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72조 등).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가목 중 “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·특별자치도”를 “통합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, 통합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 공동으로 제74조

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포함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정보, 정책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·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한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,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.

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2(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전 기획·공모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과 협의하여 제74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기획·공모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3호가목, 제5조제3항, 제8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5조(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신청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8조(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)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[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그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를 말하며,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 이하 “신청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]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특별시장, 통합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
또는 특별자치도지사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) ① -----

-----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-----

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 략)

<신 설>

라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
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동으로
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
에 포함될 혁신사업 또는 전략
산업등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
정보, 정책 동향 등 필요한 사
항을 제공·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자
유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
한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
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른
규제자유특구의 운영, 혁신사업
또는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
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
수 있다.

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
항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
하는 주요 사항을 고시할 수
있다.

⑧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72조의2(규제자유특구 관련 사
전 기획·공모) 중소벤처기업
부장관은 제72조에 따른 규제
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이 있기
전이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장 및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

과 협의하여 제74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기획·공모할 수 있다.